(건축-002) 재건축사업 철거공사현장 크레인 붐대 파단사고

공사명	○○·○○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				
사고일시	2017년 6월 2일(금) 13:30분경		기상상태	맑음	
소재지	서울시 영등포구	사고 종류	파열(파단)	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사망 2명		
장비 손실	이동식크레인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	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대지면적 : 29,428㎡

○ 추진사항: 2016.11 관리처분계획 인가

2) 사고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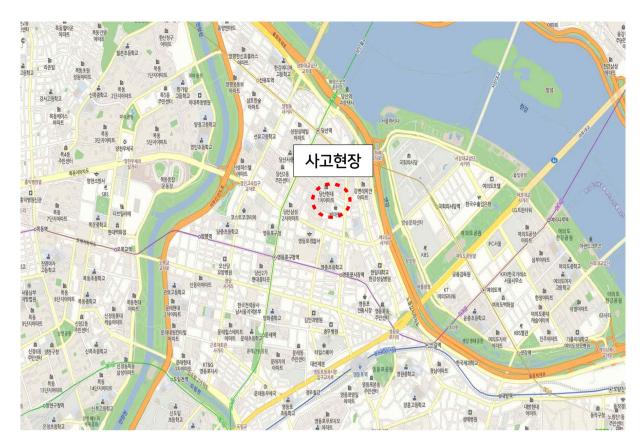
○ 세대내 석면철거를 위해 작업자 2명이 스카이차량(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)의 작업대에 탑승 하여 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중 스카이차량의 붐대가 파단되어 작업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

3) 사고원인

○ 스카이장비 결함 및 장비사용규칙 미준수로 추정됨.

나. 재발방지대책

-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(제조자가 제공 하는 사용설명서)의 사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밸브는 최대 정격하중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.
-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(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)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작업 등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